

중도인출/담보대출

| 제도종류 | 중도인출 | 담보대출* |
|-----------|------|-------|
| 확정급여형(DB) | 불가능 | 불가능 |
| 확정기여형(DC) | 가능 | 불가능 |
| 개인형IRP | 가능 | 불가능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아래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가입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담보대출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현재 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다.

■ 법정 중도인출사유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시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시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限)
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시
4. 최근 5년 이내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2020.04.30 시행예정)으로 6개월 이상 요양시 지출금액과 상관없이 허용되던 중도인출이 가입자가 연간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상 인정되는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퇴직급여 지급절차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의무이전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개인IRP로의 이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개인IRP 의무 이전 예외사유 〉

- ① 만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②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 퇴직급여 지급절차

1. **퇴 직 자** 퇴직급여 수령용 **개인IRP 가입 후** 사용자에게 퇴직신청
2. **사용자(기업)**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
3. **퇴직연금사업자** 개인IRP에 세전 퇴직금 지급
4. **사용자(기업)**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신고
5. **퇴 직 자** 개인IRP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 신청하여 급여수령

■ 개인IRP 이전 시 효과

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퇴직금을 개인IRP로 이전시 퇴직소득세는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시 까지 과세이연 됩니다. 즉, 세금까지 채투자 하는 효과가 있어 세후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것보다 실질 운용손익이 증가합니다.
2. **운용손익 과세이연**
 개인IRP에서 적립금 운용시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의 과세 없이 운용되며,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이연 되어 실질 운용손익이 증가합니다.
3.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절세**
 개인IRP에서 연금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TIP!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세금 절약 방법

- | | |
|---------------|---|
| STEP 1 |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IRP계좌 개설 |
| STEP 2 | IRP계좌에 퇴직금 입금후 퇴직소득세 환급신청 |
| STEP 3 |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확인절차 후 회사가 IRP계좌로 입금 |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고,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기존 세금의 **30~40% 절감**

자산운용의 일반적 원칙

개별금융상품의 수익(Return)은 위험(Risk)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수익이 높으면 그만큼 손실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기대수익이 낮으면 그만큼 발생하는 위험도 낮아지게 됩니다. 자산 운용 시장기투자과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면 위험은 줄이면서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 장기투자

주식·펀드와 같이 수익변동성(위험)이 큰 상품에 투자할 경우 장기간 투자하면 수익변동성이 줄어들고 투자수익이 재투자되어 복리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분산투자

- 투자시기의 분산 : 일정기간 동안 투자금을 나누어 투자하는 적립식은 투자 타이밍을 분산시킴으로써 “쌀 때 많이”, “비쌀 때 적게” 매수할 수 있어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투자대상의 분산 : 한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보다 위험과 수익 특성이 다른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기대수익률을 높이는데 있어 투자위험은 낮출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방법

퇴직연금 자산은 사용자(또는 가입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됩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위험이 없고 확정급리를 제공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이 수반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투자성향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의 주체

- 확정급여형(DB) : 사용자
- 확정기여형(DC)/IRP: 가입자

■ 자산운용방법

투자성향 분석

투자자의 수입원, 투자경험,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투자성향분석

운용상품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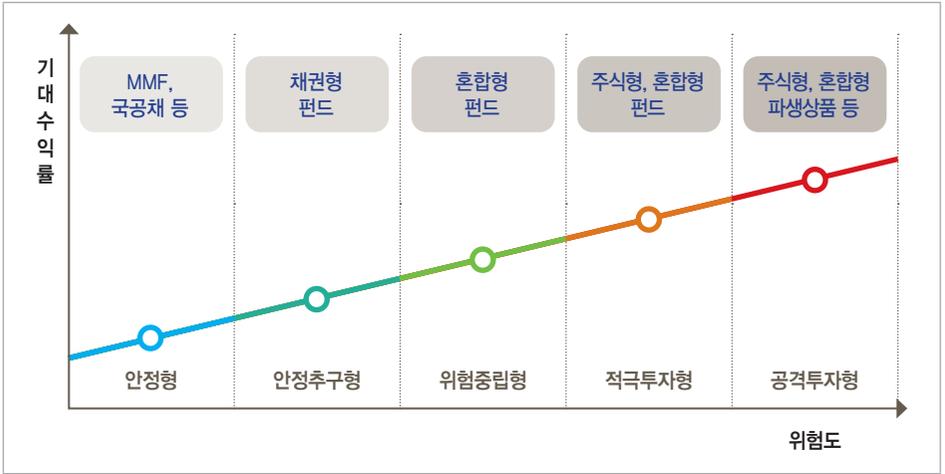
운용상품의 위험과 수익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 선정

운용방법 등록/변경

- **매수예정상품 등록/변경**: 새로 입금하는 자기에 적용할 운용지시 변경절차
- **보유상품 변경**: 보유 중인 자기에 적용할 운용지시 변경절차
(보유중인 운용상품을 매도 후 다른 운용상품을 매수)

* 운용방법 등록/변경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조회·변경 가능

〈투자자유형에 따른 투자가능상품〉



운용상품종류

※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또는 「경남은행 홈페이지(www.knbank.co.kr) - 금융상품물 - 퇴직연금 - 퇴직연금상품 메뉴」를 활용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리금보장형 상품(정기예금)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상품이며 부담금 납입시 고시되는 이율을 적용하여 정해진 만기(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고, 만기 도래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만기 연장됩니다.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상품이더라도 은행별, 만기별 적용이율이 다양하므로 입금하시기 전 적용이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수익증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집합투자증권(펀드)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수료와 별도로 펀드에서 정하는 판매수수료, 운용보수, 환매수수료 등이 부과되며, 기준가격, 수익률, 기본정보 등은 경남은행 홈페이지 또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험자산 투자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관련 감독규정에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위험자산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 웰스타로보(WealSTAR Robo)

수익증권 투자가 처음이시거나 상품 선정이 어려우신 경우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제안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웰스타로보(WealSTAR Robo)가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금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하여 드립니다.

노후설계의 중요성

고령화 · 저출산의 급속한 진행으로 은퇴후의 생활은 점차 장기화 되어가는 반면,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발표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년~2067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경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며,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부양 해야 할 인구인 총 부양비는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 자료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년~2067년)(중위시나리오)

※ 초고령화 사회: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

경제적 준비 없이 오래 사는 리스크 즉,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에 대비 하기 위해서 생애 주기 별 발생하는 이벤트와 주요 재무 목표를 사전에 고려하여 노후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기초적인 생활) · 퇴직연금(표준적인 생활) · 개인연금(여유로운 생활)의 3층 연금 구조를 활용하여 생산가능시기에 필요 노후자금에 대해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주기 | 미혼기 | 신혼기 | 자녀출산 · 양육기 | 자녀학령기 | 자녀성년기 | 자녀독립 및 은퇴기 |
|---------|--|---------------------------|--|--------|--------------------------------|---------------------------------------|
| 라이프 이벤트 | - 대학진학 - 경제적독립준비 - 취업 - 자동차구입 - 결혼 | - 새로운 경제 생활에 적응 - 주택마련 | - 자녀출산 · 양육 - 새로운 가족원과의 경제생활에 적응 - 주택 마련 | - 자녀진학 | - 자녀의 대학진학 - 자녀결혼 - 조기퇴직 | - 은퇴 - 가족원의 죽음 - 건강관리 - 상속준비 |

| | | | | | | |
|------------|------------------------|------------------------|------------------------------------|--|---------------------------|--------------------|
| 주요 재무목표 | - 경제적독립준비 - 결혼자금 마련 | - 결혼자금 마련 - 주택자금 마련 | - 자녀교육자금마련 - 주택구입 또는 확장자금 마련 | - 자녀 사교육비 - 자녀 대학등록금 준비 - 주택구입 또는 확장자금 마련 | - 자녀 대학등록금 - 은퇴생활준비 | - 은퇴생활영위 - 상속준비 |
|------------|------------------------|------------------------|------------------------------------|--|---------------------------|--------------------|

※ 금융감독원, 생애주기 별 금융교육 가이드라인

제도중단 또는 폐지 시 처리방법

■ 퇴직연금제도 중단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기본적인 업무〉

- ①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再開始)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 ② 가입자 교육의 실시
- ③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

- ①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 ② (가입자교육을 위탁 받은 경우) 가입자 교육의 실시
- ③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등

■ 퇴직연금제도 폐지

노사합의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도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이전(계좌이체) 절차

1) 퇴직연금 규약 변경신고

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해당되지 않음.

2) 신규 계약 체결 및 계약이전 신청

퇴직연금을 이전할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와 운용관리/자산관리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이전 전 퇴직연금사업자에 계약이전을 신청합니다.

3) 가입자 정보, 적립금 정보 및 적립금 이전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자 정보, 적립금 정보 및 적립금이 이전됩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이체〉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으로 가입자는 이/수관 금융기관 중 한 곳에서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의 유형〉

① 개인IRP → 개인IRP

② 연금저축 ↔ 연금저축

③ 개인 IRP ↔ 연금저축(연금수령요건* 만족자만가능)

* 연금수령요건 : 만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이상 (퇴직금이 포함된 연금계좌는 만55세 이상)

〈계좌이체의 절차〉

① 계좌이체 받을 개인IRP 계좌개설

② 계좌이체 신청

③ 가입자의 계좌이체 의사 확인 (전화 통화 또는 이체하는 금융기관 방문)

④ 이체하는 연금계좌의 운용중인 상품매도

⑤ 경남은행 개인IRP 입금완료

기업 도산시 퇴직급여 청구안내

퇴직연금 가입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의 폐업, 부도, 사실상 도산, 사용자의 행방불명 등 사업장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곤란한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1. 당해 사업장의 폐업, 부도, 사실상 도산 등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퇴직급여청구자(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 ②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퇴직급여 지급액

- 확정급여형(DB)제도 : 금융기관에 등록된 최종 추계액 × 적립비율
-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제도 : 해당 가입자 적립금